##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08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조승환·이성권·서일준

안철수 · 김승수 · 이인선

구자근 • 인요한 • 김성원

곽규택 • 임이자 • 유용원

김은혜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있고,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감소, 인구집중현상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실태조사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부담을 분산시키고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 법률 제 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을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실태조사 대행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다음 각 목의 자
  -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 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등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을 "실태조사 대행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을 "실태조사 대행자는"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대행자는 미리 시장·군 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을 "실태조사 대행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생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시장・군수등은 <u>대통령령으</u>	②다음 각 호
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u>&lt;신 설&gt;</u>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
	<u>관</u>
<u>&lt;신 설&gt;</u>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
	건을 구비한 다음 각 목의 자
	<u>가. 「건축사법」 제23조제1</u>
	<u>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u>
	<u>설</u> 신고를 한 자
	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
	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
	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등록한 자
③ 시장・군수등 또는 <u>제2항에</u>	③
<u>따른 전문기관의 장은</u> 실태조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자
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하 "실태조사 대행자"라 한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u>다)는</u>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⑤ (생 략)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시장 지 · 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 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 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시장·군수등 또는 제5조제 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 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렁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 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 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 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 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u>이 경우 제2항제2호에</u>
따른 실태조사 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u>한다.</u>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실태조사 대행자
는 <u>는</u>
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대행
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실태조사
<u>대행자는</u>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 ·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 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실태조사 대행자
<u>는</u>
<u>이 경우 제5</u>
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